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286
----------	------

2017. 11. 21
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이창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242번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김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27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“시 도시계획위원회”의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,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의 재위촉시 연임규정을 보완하고, 현행 경사도 기준의 단서조항(격자별 평균경사도의 최댓값 적용)을 조정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연임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공백기를 거치지 않고 재위촉 될 경우 이를 연임으로 간주토록 함(안 제57조제5항 신설).

-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규정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조정함(안 제63조제1항).
-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준용규정을 정비함(안 제63조의2제4항).
-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최댓값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함(별표 1 제1호 가목(3)의 (나) 단서).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.

제63조제1항 중 “제5항부터 제10항”을 “제6항부터 제11항”으로 하고, 제63조의2제4항을 다음과 한다.

④ 제58조의2, 제62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.

제24조 별표1 제1호 가목(3)의 (나)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일필지 내에 격자(10m×10m)가 1개 이상일 경우(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·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)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(대안)

현 행	개 정 안
<p>제57조(구성 및 운영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⑤ ~ ⑩ (생략)</p> <p>제63조(공동위원회의 운영) ① 제56조, 제57조제2항, <u>제5항부터 제10항</u>,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, 제58조의2, 제58조의3,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3조의2(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등) ① ~ ③ (생략) ④ <u>제57조제4항부터 제10항, 제58조의2, 제62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57조(구성 및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.</u></p> <p>⑥ ~ ⑪ (현행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)</p> <p>제63조(공동위원회의 운영) ① -----, <u>제6항부터 제11항</u>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3조의2(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제58조의2, 제62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 1] 개발행위허가 기준(제24조 관련)

1. 분야별 검토사항

현 행	개 정 안
<p>가. 공통분야</p> <p>(1) ~ (2) (생략)</p> <p>(3) (생략)</p> <p>(가) (생략)</p> <p>(나) 평균경사도 18도 (녹지지역에 서는 12도) 미만인 토지. <u>다만, 일 필지 내에 격자(10m× 10m)가 1 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 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.</u></p> <p>(4) (생략)</p> <p>나. ~ 바. (생략)</p>	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(1) ~ (2) (현행과 같음)</p> <p>(3) (현행과 같음)</p> <p>(가) (현행과 같음)</p> <p>(나) ----- ----- . <u>다만, 일 필지 내에 격자(10m×10m)가 1 개 이상일 경우(기존 건축물이 있 는 대지에 건축허가· 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)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.</u></p> <p>(4)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